

2025년도 제10차 교육연구위원회 회의록

I 개 요

- 일 시 : 2025. 11. 25.(화) 10:00~12:30
- 장 소 : 1호관 영상회의실
- 참석현황 : 재적위원 20명 중 참석 19명, 불참 1명
 - 참석위원(19명)
 - 이인재(위원장), 최병조(부위원장), 이준한, 허 진, 안치영, 김장균, 김태성, 성영애, 김준동, 김우일, 김영균, 황문현, 김평원, 김응철, 이승호, 강희찬, 이영수, 김규원, 황병희
 - 불참위원(1명)
 - 이남식

II 회의 결과

- 제1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 안건요지 [제출자: 교육대학원장]

1. 제안사유

- 가. 교육부는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교수학습 역량을 한층 높이기 위해 대학원 학점 선이수 연수 프로그램인 마이크로디그리형 특별 연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현직 교원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요청하여 마이크로디그리형 특별연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시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에 마이크로

디그리형 특별연수를 요청하여 시행 중에 있음. 이에 우리 대학 사범 대학 부설 교육연수원에서 이수한 연수 이력을 관련 전공 대학원 석사 과정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교육대학원 재교육 전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재학 중 2개 학기까지만 휴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완화하여 대학원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휴학 시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휴학종류별 휴학 기간 및 휴학 시 제출하는 서류를 명시하여 학사운영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교사재교육 사업 기본계획(안)」 교육부, 2024. 9

나. 「25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2024. 12

3. 주요내용

가. 5조(이수학점) ⑦항에 “학칙 제16조에 의해” 삽입 및 ⑧항을 신설

나. 제14조(휴학) ①~②항을 개정 및 ③~⑧항을 신설

학칙 제16조 (학점인정) ① 국내·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또는 대학원 재입학자의 퇴학 전 취득학점은 석사학위 소요학점에 통산할 수 있다.
② 대학원 연구과정을 이수한 자가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였을 때에는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석사학위 소요학점에 통산할 수 있다.
③ 교육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수에 참여한 자의 경우 연수시간을 석사학위 소요학점에 통산하되,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4.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 교육대학원위원회 심의: 2025년 09월 29일(월)

○ 총장 방침: 2025년 11월 6일(목)

○ 의견 수렴: 2025년 11월 6일(목)~11월 12일(수)

○ 사전 심사: 2025년 11월 17일(월)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2025년 11월 25일(화)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제2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제정규정안

○ 안전요지 [제출자: 사범대학장]

1. 제안이유

- 가. AI·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이 본격화됨에 따라 교원의 역량 강화와 교육 전문성 제고가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나.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교원 대상의 질 높은 연수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로부터 교육연수원 인가를 받음.
- 다. 교원연수의 체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연수 이수실적의 학점인정 등 후속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교육연수원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가. [중앙교육연수원] 교원 연수기관 인가 심사결과 : 적합 (2025.02.11.)
- 나. [교육부]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인가(2025.06.05.)

3. 주요내용

구분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 제6조)	교육연수원의 목적, 명칭, 기능, 연수대상 및 연수종류 등을 규정
제2장 조직 (제7조 ~ 제12조)	연수원의 조직구성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
제3장 연수운영 (제13조 ~ 제17조)	연수운영을 위한 기간, 방법, 평가 등을 규정
제4장 등록·수료 및 상별 (제18조 ~ 제24조)	연수원의 등록, 수료기준, 학점인증, 상별 및 징계 등을 규정
부칙 (제1조 ~ 제2조)	시행일 및 진행 중인 연수 업무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②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학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해당 학교의 장, 교육감, 기관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가 설치한다.

○ 「인천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35조제1항

제35조(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본교의 부설기관으로 신문방송사(대학신문사, 영자신문사, 교육방송국), 대학출판부, 직장어린이집, 사범대학 교육연수원을 둔다.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교육대학원과 학점인정 관련 사전협의 완료

라. 기 타

- 학과장회의 보고 : 2025. 10. 1.(수)
- 교무회의 보고 : 2025. 11. 4.(화)
- 총장방침 : 2025. 11. 6.(목)
- 의견조회 : 2025. 11. 6.(목) ~ 11. 12.(수)
- 사전심사 : 2025. 11. 19.(수)
- 교육연구위원회 : 2025. 11. 25.(화)
- 평의원회 : 2025. 12월 중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제3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연계전공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전요지 [제출자: 융합자유전공대학장]

1. 제안사유

가. 2025.09.01. 조직개편에 따라 창의융합교육센터 산하의 창의융합교육위원회가 교육혁신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연계전공 관련 심의를 위해 학칙 시행세칙 및 융합자유전공대학 운영 규정에 명시된 융합전공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
나. 부정확한 문구 수정을 통해 연계전공 운영에 명확성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칙 시행세칙 및 융합자유전공대학 운영 규정에 따라 창의융합교육위원회를 융합전공심의위원회로 변경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가 삭제됨에 따라 인천대학교 학칙 제62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연계전공의 용어 정리
다. 과목을 지정하는 교과목, 교과과정, 폐지 교육과정에 대한 이수자 모집 불가 등 부정확한 단어 및 문장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없음
라. 추진일정

- 본부회의 보고 : 2025. 10. 13.(월)
- 교무회의 보고 : 2025. 10. 14.(화)
- 총장방침 : 2025. 10. 21.(화)
- 의견조회 : 2025. 10. 21.(화) ~ 10. 29.(수)
- 사전심사 : 2025. 10. 31.(금) ~ 11. 03.(월)
- 교육연구위원회 : 2025. 11. 25.(화)

○ 심의결과: 보류

□ 제4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학생설계융합전공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전요지 [제출자: 융합자유전공대학장]

1. 제안사유

- 가. 2025.09.01. 조직 개편에 따라 창의융합교육센터 산하 창의융합교육위원회가 교육혁신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학칙 시행세칙 및 융합자유전공대학 운영 규정 등에 따라 학생설계융합전공 관련 심의를 위한 융합전공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나. 학생설계융합전공 복수전공 이수자를 위한 학위명 확정 기준이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다. 학생설계융합전공 복수전공 이수를 위한 담임교수 역할을 명시하고 이수절차와 부정확한 문구로 인한 행정 절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문구를 명확히 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학칙 시행세칙 및 융합자유전공대학 운영 규정 등에 따라 창의융합교육센터 및 창의융합교육위원회를 융합학부 및 융합전공심의위원회로 변경
- 나. 소속학과 학장의 승인 절차를 삭제하여 기존 부복수전공과 일치하도록 결재 경로 개선
- 다. 학생설계융합전공 복수전공자의 졸업논문 제출과 관련하여 담임교수의 지도교수 역할 및 졸업논문 심사위원의 구성에 관한 조항 신설
- 라. 학생설계융합전공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전환에 대한 조항 신설
- 마. 학생설계융합전공 설계 교과목과 주전공의 동일 교과목에 대한 중복 인정 기준 명시를 위한 조항 신설
- 바. 학생설계융합전공 복수전공 학위명 확정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조항 신설
- 사. 교과과정, 과정별, 소속학과(부)의, 지도 및 수강승인, 첨부자료와 함께, 취소 등 부정확한 단어 및 문장 수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인천대학교 학칙

「인천대학교 학칙」

제66조(학위수여) ① 본교의 정해진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영어 졸업인증자격을 취득하고 졸업 논문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표 2에 따른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외국인 신(편)입학 특별전형의 한국어 트랙으로 입학한 학생은 추가로 한국어 졸업인증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④ 별표2에도 불구하고 **학생설계융합전공의 학위명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인천대학교 학칙 [별표2]

[별표 2] 수여학위종별

대 학	학 과 (부)	학 위 명	대 학	학 과 (부)	학 위 명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문 학 사	도시과학 대학	도시행정학과	행 정 학 사
	영어영문학과	문 학 사		도시환경공학부	공 학 사
	독어독문학과	문 학 사		도시공학과	공 학 사
	불어불문학과	문 학 사		도시건축학부	공 학 사
	일본지역문화학과	문 학 사	생명과학 기술대학	생명과학부	이 학 사
	중어중국학과	문 학 사		생명공학부	공 학 사
자연과학 대학	수학과	이 학 사		동북아국제통상 물류학부	동북아국제통상전공
	물리학과	이 학 사	스마트물류공학전공		물 류 학 사
	화학과	이 학 사	IBE전공		국 제 통 상 학 사
	패션산업학과	가 정 학 사	법학부		법 학 사
	해양학과	이 학 사	구분	전 공 명	
사회과학 대학	사회복지학과	사 회 복 지 학 사		유통통상학	국 제 통 상 학 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언 론 학 사		광전자공학	공 학 사
	문헌정보학과	문 헌 정 보 학 사		물류학	물 류 학 사
글로벌 정경대학	창의인재개발학과	문 학 사		동북아시아역학	국 제 학 사
	행정학과	행 정 학 사		지능로봇	공 학 사
	정치외교학과	정 치 학 사		신재생에너지	공 학 사
	경제학과	경 제 학 사		공중보건	이 학 사
	Global Trade & Service학부	무 역 학 사		향제공학	공 학 사
공과대학	소비자학과	소 비 자 학 사		줄기세포 및 조직공학	공 학 사
	기계공학과	공 학 사		유전체학	이 학 사
	전기공학과	공 학 사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 학 사
	전자공학부	공 학 사	MICE, 스포츠 및 관광	경 영 학 사	
	산업경영공학과	공 학 사	국제 비즈니스 및 세무	무 역 학 사	
	신소재공학과	공 학 사	국제 개발 협력	정 치 학 사	
	안전공학과	공 학 사	공연 예술과 시각 예술	예 술 학 사	
	에너지화학공학과	공 학 사	창의적 디자인	미 술 학 사	
정보기술 대학	바이오-로봇시스템공학과	공 학 사	연계전공	중국 연구	문 학 사
	컴퓨터공학부	공 학 사		뷰티산업	이 학 사
	정보통신공학과	공 학 사		인문문화예술기획	문 화 학 학 사
경영대학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공 학 사		소셜 데이터 사이언스	문 학 사
	경영학부	경 영 학 사		미래자동차	공 학 사
	데이터과학과	경 영 학 사		바이오융합·창업	공 학 사
예술체육 대학	세무회계학과	경 영 학 사		인공지능·창업	공 학 사
	조형예술학부	미 술 학 사		미래교육디자인	문 학 사
	디자인학부	미 술 학 사			
	공연예술학과	예 술 학 사			
	스포츠과학부	체 육 학 사			
사범대학	운동건강학부	체 육 학 사			
	국어교육과	문 학 사			
	영어교육과	문 학 사			
	일어교육과	문 학 사			
	수학교육과	이 학 사			
	체육교육과	체 육 학 사			
	유아교육과	문 학 사			

	역사교육과	문	학	사
	윤리교육과	문	학	사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없음

라. 추진일정

- 본부회의 보고 : 2025. 10. 13.(월)
- 교무회의 보고 : 2025. 10. 14.(화)
- 총장방침 : 2025. 10. 21.(화)
- 의견조회 : 2025. 10. 21.(화) ~ 10. 29.(수)
- 사전심사 : 2025. 10. 31.(금) ~ 11. 03.(월)
- 교육연구위원회 : 2025. 11. 25.(화)

○ 심의결과: 보류

□ 제5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2026학년도 학사운영계획안

○ 안전요지 [제출자: 교무처장]

1. 제안사유

2026학년도 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사 주요일정 및 추진 사항 등 학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이고도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규정

- 「인천대학교 학칙」 제24조(학년, 학기), 제25조(수업일수)
- 「인천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0조(교무처) 제5항제1호 학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나. 학사 주요일정

내용	구분	일자	
수업운영	1학기	15주	2026. 3. 3.(화) ~ 6. 15.(월)
		보강주	2026. 6. 16.(화) ~ 6. 22.(월)
	하계 계절학기		2026. 6. 23.(화) ~ 7. 13.(월)
	2학기	15주	2026. 9. 1.(화) ~ 12. 14.(월)
		보강주	2026. 12. 15.(화) ~ 12. 21.(월)
동계 계절학기		2026. 12. 22.(화) ~ 2027. 1. 13.(수)	
기말고사	1학기	2026. 6. 9.(화) ~ 6. 15.(월)	
	2학기	2026. 12. 8.(화) ~ 12. 14.(월)	
등록기간	2026년 1학기	2026. 2. 23.(월) ~ 2. 27.(금)	
	2026년 2학기	2026. 8. 24.(월) ~ 8. 28.(금)	
	2027년 1학기	2027. 2. 22.(월) ~ 2. 26.(금)	
학위수여식	2026년 2월	2026. 2. 20.(금)	
	2026년 8월	2026. 8. 21.(금)	
	2027년 2월	2027. 2. 19.(금)	
입학식	2026년	2026. 2. 27.(금)	
	2027년	2027. 2. 26.(금)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나. 합 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본부회의 보고 : 2025. 11. 17.(월)
- 교무회의 보고 : 2025. 11. 18.(화)

○ 2026학년도 학사운영계획 수립 : 2025. 11. 19.(수)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2025. 11. 25.(화)

○ 2026년도 대학 학사운영 계획 알림 시행: 11월 중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제6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기초학문진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안전요지 [제출자: 교무처장]

1. 제안사유

가. 본부회의 제언사항 및 법인4기 주요역점사업 확정과 관련하여 “기초학문 진흥사업 및 위원회 운영 업무” 일체를 기초학문 육성,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서로 이관을 진행하고자 규정 개정을 하고자 함.

※ 이관부서: 교무처 교무과 → 교육혁신본부 교육혁신과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 변경 (※ 교육혁신과 제출 의견 반영)

- 교무처장, 연구처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
- 기획처장, 교육혁신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나. 간사 변경

- 교무팀장 → 교육혁신과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없음

라. 추진일정

- 본부회의 및 교무회의 보고 : 2025. 11. 3.(월) ~ 4.(화)
- 총장방침 : 2025. 11. 4.(화)
- 의견조회 : 2025. 11. 5.(수) ~ 11. 11.(화)
- 사전심사 : 2025. 11. 14.(금) ~ 11. 17.(월)
- 교육연구위원회 : 2025. 11. 25.(화)

○ 심의결과: 수정가결

□ 제7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안전요지 [제출자: 교무처장]

1. 제안사유

○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 사업 관련 개정(제4조, 제61조)

가. 국내·외 대학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상학부의 설치 근거 및 학점 이수 완화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 집중이수제 관련 개정(제25조)

가. 교육과정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학점당 수업시간은 유지하면서 수업 시간을 단축하는 집중이수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강화하고 학사제도를 유연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 사업 관련 개정(제4조, 제61조)

가. 타 대학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가상학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

나. 정부재정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된 전공에 대해서는 복수전공자 학점 이수를 총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

○ 집중이수제 관련 개정(제25조)

가. 수업일수를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

나. 교과별 수업일수에 집중이수제 교과목 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천대학교 정관 제43조(학칙의 제·개정)

○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 사업계획서(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나.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본부회의 및 교무회의 보고 : 2025. 11. 3.(월) ~ 11. 4.(화)

- 총장방침 수립 : 2025. 11. 6.(목) ~ 11. 7.(금)
- 의견조회 : 2025. 11. 7.(금) ~ 11. 13.(목)
- 사전심사 : 2025. 11. 14.(금) ~ 11. 18.(화)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5. 11. 25.(화)
- 평의원회 심의 : 2025. 12월 중
- 이사회 심의 : 2025. 12월 중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제8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 안전요지 [제출자: 교무처장]

1. 제안사유

- 가. 교육과정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학점당 수업시간은 유지하면서 수업 시간을 단축하는 집중이수제 교과목의 경우 연속강의를 허용하여 원활한 수업 진행을 도모하고자 함
- 나. 교과목 재수강 시 실제 수업 성취도에도 불구하고 취득 가능한 성적 등급이 제한되어 학생들의 의욕 약화 및 만족도 저하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재수강 성적 상한 등급을 완화하고자 함
- 다. 재수강 제한 등급 완화에 따른 학업 성실도 저하 및 제도 남용과 같은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기존의 재수강 성적 처리 방식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동일교과목 연속강의를 허용하는 수업에 집중이수제 교과목을 추가
- 나. 재수강 성적 등급 제한 완화: B+(3.5) → A0(4.0)
- 다. 재수강 성적 처리 방식 변경: 상위 성적 인정 → 최초 성적 삭제
- 라. 재수강 성적표 반영 기준 변경
: 상위 성적 반영 → 재수강 이후 성적 반영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적 상한 등급	B+ (3.5)	A0 (4.0)
성적 처리 방식	상위 성적 인정	최초 성적 삭제
성적표 반영 기준	상위 성적 반영	재수강 이후 성적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천대학교 정관 제43조(학칙의 제·개정)
-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나. 추진경과

구분	집중이수제	재수강
본부회의 보고	2025.11.03.(월)	2025.10.13.(월)
교무회의 보고	2025.11.04.(화)	2025.10.14.(화)
총장방침	2025.11.07.(금)	2025.10.15.(수)
의견수렴	2025.11.07.(금) ~ 11.13.(목)	2025.10.16.(목) ~ 10.22.(수) - 의견 수렴 1건: 불수용
사전심사	2025.11.18.(화)	2025.10.28.(화)
평의원회 심의	2025. 12월 중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제9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2)

○ 안건요지 [제출자: 교육혁신본부장]

1. 제안사유

가. 우리 대학의 핵심교양 및 심화교양 교과목은 30명 이상인 경우 개설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회화 및 예술체육실기 과목 수강신청자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와 야간강좌인 경우, 그 밖에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함.

나. 이에 학생들의 교양 교과목 선택의 폭을 다양화하고 소규모 강좌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자, 핵심교양 및 심화교양 교과목의 개설 기준 인원을 20명 이상으로 하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6조 제3항 “30명 미만” 을 “20명 미만” 으로 하고 단서 조항의 제1호 “외국어회화 및 예술체육실기 과목 수강신청자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를 삭제하고, 제2호와 제3호를 각 제1호와 제2호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업무 유관부서(학사과)와 협의 완료

라. 기 타

○ 본부회의 보고 : 2025. 10. 13.(월)

○ 교무회의 보고 : 2025. 10. 14.(화)

○ 총장 방침 : 2025. 10. 15.(수)

○ 의견 수렴 : 2025. 10. 15(수) ~ 10. 22(수)

○ 사전 심사 : 2025. 11. 11.(화)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2025. 11. 25(화)

○ 평의원회 심의: 2025. 12월 중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제10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안전요지 [제출자: 기획처장]

1. 제안사유

가. 업무의 전문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부서별 기능 및 사무분장을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현행 부처장 직위 운영과 규정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RISE 사업단의 보직 겸임 체계를 조정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라.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운영을 위한 가상학부를 직제에 반영하고자 함

마. 부설기관으로 교원양성혁신센터를 신설하여 교원양성 교육의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무과, 교육혁신과, 성과관리인증센터) 부서간 업무 조정 및 분장사무명 변경

- 부서간 업무 조정(제10조제4항, 제16조제3항 및 제7항)

분장사무	당초	변경
기초학문 4년 단위 육성 및 지원	교무처	교육혁신본부
기초학문진흥위원회	교무과	교육혁신과
비교과 교육과정의 평가 및 환류 모델 개발	교육혁신본부 교육혁신과	교육혁신본부 성과관리인증센터
교수력 향상 및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개발		
학습법 특강, 세미나, 학습공동체, 공모전 등 학습역량 강화프로그램 운영		
핵심역량 진단시스템 개발·운영		

- 교육혁신과 분장사무 중 AI 교육혁신 체계 구축을 교육혁신 체계 구축으로 변경(제16조제3항)

나. (부처장) 교무처, 학생·취업처, 기획처, 연구처에 부처장을 두도록 한 규정을, 부처장을 둘 수 있다로 변경하고, 국제대외협력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도록 조항 신설(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부센터장을 학생·취업부처장에서 취업경력개발원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변경함(제11조제15항)

라. (RISE사업단) RISE사업단장 및 부단장을 부교수 이상 교원이 겸보하는 것으로 변경(제12조제11항 및 제12항)

- RISE사업단장: 기획처장 겸임⇒부교수 이상 겸보

- RISE사업부단장: 산학협력단장 겸임⇒부교수 이상 겸보

※ 관련: 「인천대학교 RISE사업단 운영 규정」 제정규정안

마. (가상학과(부)) 가상학부로 ‘HUSS 포용사회이니셔티브학부’ 신설(제19조제2항)

바. (부설기관) 사범대학 부설기관으로 ‘교원양성혁신센터’ 를 설치함(제35조제1항)

사. (대학, 독립학부) 교원양성혁신센터 설치에 따른 소속 부설기관 업무지원 명시

- 사범대학 교육연수원, 교원양성혁신센터 등 단과대학(또는 독립학부) 소속 부설기관의 운영을 위한 업무지원 근거 마련(제19조제9항)

· (추가) 28. 대학 및 독립학부 소속 부설기관 업무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관계부서(교무과, 교육혁신본부, 사범대학 등) 업무 이관 및 부설기관 신설에 대한 합의 완료

라. 기 타

○ 본부회의 및 교무회의 보고: 2025.11.03.(월), 11.04.(화)

○ 총장 방침 수립: 2025.11.06.(목)

○ 의견조회: 2025.11.06.(목)~11.12.(수)

○ 사전심사: 2025.11.18.(화)

○ 심의결과: 원안가결

제11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사무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안건요지 [제출자: 기획처장]

1. 제안사유

가.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

나. 사무 전결 기준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개선

2. 주요내용

가. [별표] 부서별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 처리사항 변경

연번	직제/부서	변경사항
1	교무과	• ‘기초학문 지원·육성’ 단위업무 삭제
2	교육혁신과	• ‘기초학문 지원·육성’ 단위업무 추가 •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단위업무 삭제 • ‘교육혁신사업 분석 및 품질관리’ 단위업무 삭제
3	성과관리인증센터	•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단위업무 추가 • ‘교육혁신사업 분석 및 품질관리’ 단위업무 추가 • 직제 오기 수정(교육혁신원→교육혁신본부)
4	단과대학, 독립학부	• 사범대학 교원양성혁신센터 등 유관 부설기관 행정지원 근거 마련
5	창업지원단	• 창업지원단 부단장 전결 사항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인천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 본부회의 및 교무회의 보고: 2025.11.03.(월), 11.04.(화)

○ 총장 방침 수립: 2025.11.06.(목)

○ 의견조회: 2025.11.06.(목)~11.12.(수)

○ 사전심사: 2025.11.18.(화)

○ 심의결과: 수정가결

□ 제12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안건요지 [제출자: 사무처장]

1. 제안사유

가.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 부재에 대한 보완책으로 부위원장을 신설하고자 함.

나. 매년 원아의 입학과 졸업, 연령별 반편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재 위원의 임기 2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을 어린이집 학사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자 함.

<현 제도의 문제점>

- 재원 중 유치원으로 이동하거나 이사, 졸업의 사유로(예: 5세 이후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동, 7세 이후 졸업 등) 불가피한 위원 변경이 발생하여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잦은 위원 변경의 우려가 있음
- 동일 위원이 장기간 재임할 경우 신규 학부모 위원의 참여 기회가 감소하여 학부모 전체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움

<개정 시 기대효과>

- 매년 학년도 시작 시점에 맞춰 해당 연령반의 학부모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여 어린이집 연간계획수립 등 매년 변화하는 어린이집 운영환경(보육정책, 학부모 요구 사항 등)에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 등 적극적인 참여 유도
- 보다 많은 학부모에게 위원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연령별 대표성과 참여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함

2. 주요내용

가. 제9조 제4항 “위원장” 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으로 함.

나. 제9조 제5항 “2년으로 하며” 를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없음

라. 기 타

- 본부회의 보고 : 2025. 10. 27.(월)
- 교무회의 보고 : 2025. 11. 4.(화)
- 총장 방침 : 2025. 11. 6.(목)
- 의견 수렴 : 2025. 11. 6.(목) ~ 11. 12.(수) [제출의견 없음]
- 사전 심사 : 2025. 11. 17.(월) [수정사항 없음]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5. 11. 25.(화)
- 평의원회 심의 : 2025. 12월 중

○ 심의결과: 원안가결

제13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직원 성과평가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건요지 [제출자: 사무처장]

1. 제안사유

가. 2025. 9. 1자 조직개편으로 「인천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근무성과평가의 [별표3] 평가단위별 평가자·확인자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별표 3)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를 지정함

나. (안제11조제1항) 오기 수정

- (기존) 별지 4호서식 → (개정) 별지 3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천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없음

라. 기 타(예정)

○ 교무회의 보고 : 2025. 10. 14.(화)

○ 총장 방침 : 2025. 10. 16.(목)

○ 직원인사위원회 심의 : 2025. 10. 17.(금)

○ 의견 수렴 : 2025. 10. 21.(화) ~ 2025. 10. 28.(화)

○ 사전 심사 : 2025. 10. 29.(수)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5. 11. 25.(화)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제14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안전요지 [제출자: 연구윤리센터장(연구처장)]

1. 제안사유

가. 생명윤리법에 부합하도록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개정을 통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의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위탁 수행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사업’ 2024년 서류평가 지적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지침의 조문구성, 용어 등의 일치성 확보

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을 반영한 운영 규정 현실화

- 정규회의 분기별 1회 이상 --> 2개월에 1회 이상

- 복수심의위원회 운영 가능성 확보

- 자문위원 --> 자문

- 전문간사 --> 전문위원, 행정간사 --> 전문간사

- 관련 수당 지급

- 표준운영지침 운영 관련법과 일치성 확보

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사업’ 2024년 서류평가 반영
- 위원장의 임기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향후 추진일정

- 본부회의 보고: 2025. 9. 8.(월)
- 교무회의 보고: 2025. 9. 16.(화)
- 총장 방침: 2025. 10. 29.(수)
- 의견 수렴 : 2025. 10. 30.(목) ~ 2025. 11. 6.(목)
- 사전 심사 : 2025. 11. 7.(금) ~ 2025. 11. 13.(목)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5. 11. 25.(화)
- 평의원회 심의 : 2025. 11월 ~ 12월 중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제15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제정지침안

○ 안전요지 [제출자: 연구윤리센터장(연구처장)]

1. 제안사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항제3호다목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에 근거하여 당 지침을
마련하고 연구자에게 공개하고자 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2.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3.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나.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

다.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2. 주요내용

가. 당 지침의 목적 및 기본원칙 등(안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7조)

나. 인간대상연구의 심의 및 심의면제, 해당 심의 절차(안 제2장 인간대상연구 제8조부터 제12조)

다.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및 심의면제, 해당 심의 절차(안 제3장 인체유래물연구

제13조부터 제18조)

라.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안전대책, 기록의 유지와 정보의 공개, 이해상충, 심의절차의 준수, 연구자의 권리 등(안 제4장 기타 제19조부터 제23조)

3. 참고사항

가. 향후 추진일정

- 본부회의 보고: 2025. 9. 8.(월)
- 교무회의 보고: 2025. 9. 16.(화)
- 총장 방침: 2025. 10. 29.(수)
- 의견 수렴 : 2025. 10. 30.(목) ~ 2025. 11. 6.(목)
- 사전 심사 : 2025. 11. 7.(금) ~ 2025. 11. 13.(목)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5. 11. 25.(화)

○ 심의결과: 원안가결

제16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전부개정지침안

○ 안전요지 [제출자: 연구윤리센터장(연구처장)]

1. 제안사유

가. 생명윤리법 및 생명윤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현행화 필요함

나. 표준운영 지침 전부개정을 통하여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연구계획 및 과정, 결과에 대한 심의 및 조사감독 등의 체계성을 제고하여 연구대상자 보호 및 연구자 편의 제고

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자심의시스템(e-IRB) 도입에 따른 운영의 체계적 정비 및 보완이 필요함

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위탁 수행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사업’ 2024년 서류평가 지적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관련 회의 성립, 의결 기준 심의 절차 명확화 및 심의 결과 보완

나. 위원장 임기 및 연임, 전문위원 역할, 위원의 위촉·연임·해촉에

대한 절차 등 정비

다.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에 따른 신청, 심의 절차 수정·보완 및 심의결과 추가(조건부 승인)
라. 평가점검표 등 표준운영지침 별지 서식 수정 보완 및 추가 등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전부개정지침(안) 및 별지서식 참조

3. 참고사항

가. 향후 추진일정

- 본부회의 보고: 2025. 9. 8.(월)
- 교무회의 보고: 2025. 9. 16.(화)
- 총장 방침: 2025. 10. 29.(수)
- 의견 수렴 : 2025. 10. 30.(목) ~ 2025. 11. 6.(목)
- 사전 심사 : 2025. 11. 7.(금) ~ 2025. 11. 13.(목)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5. 11. 25.(화)

○ 심의결과: 원안가결

제17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국제교류운영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지침안

○ 안건요지 [제출자: 국제대외협력처장]

1. 제안사유

- 2025년 9월 조직개편에 의거 기존 국제교류원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교류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할 인천대학교 국제교류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구체화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운영위원회 목적 및 기능 (안 제1조 ~ 제2조)
- 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안 제3조 ~ 제4조)
- 다. 운영위원회 회의(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 인천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
- 인천대학교 국제교류원 운영규정(폐)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추진일정

- 본부회의 보고 : 2025. 09. 29.(월)
- 교무회의 보고 : 2025. 10. 14.(화)
- 총장 방침 : 2025. 10. 15.(수)
- 의견 수렴 : 2025. 10. 15.(수) ~ 10. 23.(목)
- 사전 심사 : 2025. 10. 28.(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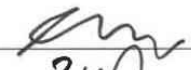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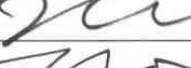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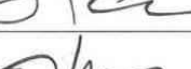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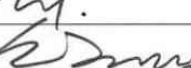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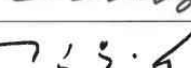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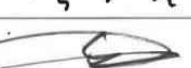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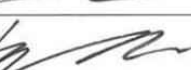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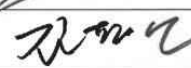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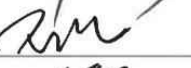


○ 심의결과: 원안가결

2025년도 제10차 교육연구위원회 회의결과

구 분	안 건 명	심의결과	
심 의	10-1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원 안 가 결
	10-2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제정규정안	원 안 가 결
	10-3	인천대학교 연계전공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보 류
	10-4	인천대학교 학생설계융합전공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보 류
	10-5	인천대학교 2026학년도 학사운영계획	원 안 가 결
	10-6	인천대학교 기초학문진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수 정 가 결
	10-7	인천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원 안 가 결
	10-8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1)	원 안 가 결
	10-9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2)	원 안 가 결
	10-10	인천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 안 가 결
	10-11	인천대학교 사무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수 정 가 결
	10-12	인천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 안 가 결
	10-13	인천대학교 직원 성과평가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원 안 가 결
	10-14	인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 안 가 결
	10-15	인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지를 위한 윤리지침 제정지침안	원 안 가 결
	10-16	인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원 안 가 결
	10-17	인천대학교 국제교류운영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지침안	원 안 가 결

2025년 제10차 교육연구위원회 서명부

1. 일 시 : 2025. 11. 25.(화) 10:00
 2. 장 소 : 대학본부 5층 영상회의실

연번	구분	직위	성명	서명
1	위원장	총장	이인재	
2	부위원장	교학부총장	최병조	
3	위원	기획부총장	이준한	
4	위원	대학원장	허진	
5	위원	인문대학장	안치영	
6	위원	자연과학대학장	김장균	
7	위원	사회과학대학장	김태성	
8	위원	글로벌정경대학장	성영애	
9	위원	공과대학장	김준동	
10	위원	정보기술대학장	김우일	
11	위원	경영대학장	김영균	
12	위원	예술체육대학장	황문현	
13	위원	사범대학장	김평원	
14	위원	도시과학대학장	김응철	
15	위원	생명과학기술대학장	이승호	
16	위원	교무처장	강희찬	
17	위원	학생·취업처장	이영수	
18	위원	기획처장	김규원	
19	위원	연구처장	황병희	
20	위원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이남식	